

누구의 입장에서 성폭력 개념인가?: 성폭력 다루기에서 성폭력 끝내기로

변황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화여대 '성문화' 강사>

1. 들어가며
2. 성폭력은 가해자(남성)의 경험이다.
3. 성폭력 가해자가 '동의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4.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 성폭력 끝내기

1. 들어가며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언동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상대방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 특히 상대방이 성에 대한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 등까지 포함한다. 특히 직장을 포함한 조직사회 내에서의 성폭력은 여성들의 자기발전, 행복추구권, 노동권, 생존권 등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의 성폭력 개념을 가지고 실제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단주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될 수 있다.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의 구성요건, 이에 대한 통념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현행법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인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 행위,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라는 공통점(형식적으로는 합의의 끌어내고 있다.)이 있음에도 무엇이 성폭력이고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대립은 성별구도로까지 번지고 있다. 즉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이란 누구의 입장인가?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진실한 것인가? 그런데 진실한 것으로 가해자(주변사람 포함하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해자야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가해자의 이야기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보다 진실처럼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성폭력이란 자신이 놓여있는 위치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인가? 남자와 여자이냐의 성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성폭력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인지되는 것일까? 즉 성폭력은 해석의 문제이고 권력게임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몸에 기억된 고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성폭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예민해서,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어서 성관계가 성폭력으로 둔갑한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억지로 꾸며낸 거짓인가? 나는 성폭력개념, 의미, 범주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 성폭력을 끝내자는 운동의 맥락에서 정치성과 역사성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이 글을 시작한다. 즉 피해자의 고통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석해서 끝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으로 추상화시켜서 정의하며 이 의미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법담론중심의,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되는)성폭력개념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성폭력 의미형성과정은 곧 여성운동의 과정이며 이 운동을 통해 그 의미 또한 재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폭력은 가해자(남성)의 경험이다

(피해자 담론과 가해자 담론이 경합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성폭력으로 명명되기 전에도 성폭력 같은 상황은 과거에도 있어왔다. 단지 그때는 여성이 감당해야 할, 남성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로 취급해져 왔다는 사실이다. 즉 성폭력은 범죄이기 이전에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남녀관계에서 의례 생기는 고통으로서 존재해 온 것이다. 죽을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면 사랑으로서 성관계로 미화되기도 하며 야간의 폭력과 강제가 있더라도 여성의 수치이자 잘못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문제화되면서 여성들은 붓물 터지듯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름이 없던 행위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하나만으로 그들은 상담창구나 자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성폭력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여성들은 '이름이 있는 행위'를 언설화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자신의 피해 고통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가해자의 사과문, 실명공개, 실형 등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피해 극복 뿐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폭력이 공식화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이겠지만 이 사회에서 이 목소리들이 제대로 평가되려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강#구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상습적이며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피해자를 낼 수 있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건을 공개하였다. 그러나(성폭력 사건은 증거가 남기 어려운데다가 특히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서 강#구가 끝까지 부인하면 이길 것이라는 세간의 통념을 반영하듯이) 가해자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폭력의 가해자 각본이다.

이러한 성폭력 각본에 대해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다른 경험을 하며 그 경험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갖게 되므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남녀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할 때 피해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해서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여성계에서는 주장한다. 여성들을 동일한 정체성으로 보아 권력이 없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개인 여성들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피해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를 해석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입장은 분명 타당하나 납득해야 될, 주로 판단주체의 입장에 서있는 상대방은 이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하물며 피해자들이 약자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

리적인 증거가 있는 위기 상담이 아닐바에는 ‘부인’만이 능사라고 생각되는 성폭력 범죄에서 남녀관계라는 특수성 즉 제 3자가 있을 수 없는, 증거도 없는 성폭력 피해 행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몇 차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피해자는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의 주장을 선언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즉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인 여성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남성중심성을 드러내야 한다. 여성의 저런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증의 예로 보여라라고!

1) 성폭력은 남성의 경험이다. 의도적이든 그 상황에서 충동적이든 성폭력은 이제까지의 남성의 성인식, 신념체계, 가치관 등을 반영한다. 그들에게 하나의 성적 실행일 뿐이다. 그들의 의지와 해석에 의한 실천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들이 성폭력이라 주장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실컷 좋아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나 라는 그들의 입장은 일견 타당한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을 ‘누가 제의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누가 좋아했다고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인 흥분, 욕망, 지배...로 인해) 성폭력을 제의하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있다(그러니 나는 해도 좋다.)라고 판단한 주체는 바로 성폭력 가해자라고 지목 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그들은 여성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여성들이 ‘그들이 생각하는대로’ 거부하지 않았을 수 있다. 여성들은 여성들 방식대로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의사로 읽지 않는다.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 행여나 여성이 (그들이 보기에)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친밀감, 배려, 신뢰, 창피.....) 혹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 등의 담론들은 남성의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왜 여성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말일 것이다부터 시작하면서 남성들의 입장들은 오해일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가?

3) 물론 성폭력 가해자는 남성만은 아니다. 동성간의 성폭력, 권력 차에 의한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성폭력도 있다. 본 상담소의 경우 약 3%의 상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이며 여성은 피해자이다. (단 모든 남성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것과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대부분이 남자인 성폭력 가해/피해 특성을 보면 성폭력 경험은 남성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3. 성폭력 가해자가 ‘동의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성폭력 경험이 남성의 경험이라면 피해경험은 여성의 경험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면 그 고통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보다 왜 고통이 수반되는지를 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 실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한다. 이를 위한 첫째로 성폭력의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사람이 자신이 의도한 성적 제의에 피해자

가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여관에 왜 갔다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여관 가
자고 했니? 왜 여관 잡았니?) 한쪽(꼭 남성이 아니더라도)의 성적 제의에 다른 한쪽은 예와 아니오 라는 표현
을 할 수 있으며 ‘예’(강한 동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자신의 의도를 실천할 수 없다. 예(강한 동의)
와 아니오(강한 거부)의 상황이 모호할 때 예를 들면 습관적 순응, 찬동, 말없는 반대, 복종, 심지어 강요된 복
종까지 피해자의 상황이 여러모로 해석될 때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스스로 해석하여 실행할 수 없다. 성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예’라는 동의를 입
증해야 한다. (나중을 위하여,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성적제의를 한 사람은 동의의
증거를 남겨둘 정도로 성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제기했는데 가해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일 수 있다. 현 성폭
력 담론처럼 피해자가 거부의사(폭행을 피하려는 저항이나 어쩔 수 없는 위계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2차 가해 등을 피할 수 있다.

2)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중심에 선
해석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해석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여부를
재단하는 것 자체가 남성 중심적 발상에 좌우되는 것이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때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는 변화할 수 있다.

3) 가해자의 피해자 동의 입증(나는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이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강#구
사건처럼 피해자(대리인, 진상조사위 등)의 질문요청에 완벽하게 불응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반증의 예로서 성
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시키거나 출두 조사를 권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누가 직장 내 등의 위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친밀한 정도, 성별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 성폭력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 문제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는지의 정
황관계를 따져야 한다.

4) 피해자의 고통의 체화 정도는 각 여성들의 삶의 경험의 맥락-여성주의 의식, 성의식, 성경험 등의 주체
의식, 친밀함/신뢰성 등의 가해자와의 관계 정도, 자신의 입지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
한 성적 언동은 분명 분노스럽고 억울하고 혐오스럽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는 피해자
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야 만이 ‘성폭력에 대한 보호법익’이 모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
되는 것이다. 즉 현행법과 현행 성폭력 개념이 누구를 위한 성폭력 특별법이고 성폭력 개념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 성폭력 끝내기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 개소시 아내구타를 문제화하면서이다.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래, 강간문제가 이슈화 될 때마다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합했으며 특히 1988년도의 변월수씨 사건은 강간 피해자의 사법처리 과정의 부당성 문제를 제기해 강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강간 등의 사건 등은 일상세계와는 별개인 범죄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으로 인지되었으며 강간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언급조차 꺼리는 금기사항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뚜렷한 강간의 문제화, 여성주의의 성장, 성폭력(특히 강간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여성운동의 관심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반성폭력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특히 5년여간의 투쟁 끝에 승소한 신#휴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우조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적 표현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당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했는지 아닌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도 인정하였다. 그 외 김#오 사건으로 근친간의 성폭력이, *유치원 원생 성폭력 사건으로 어린이 성폭력이, 안산\$ 사건으로 장애인 성폭력이, 장@사건으로 운동권 사회의 성폭력이, 사단장 김#소장의 여중위 성추행사건으로 군대내의 성폭력이, 혜& 스님 사건으로 종교인의 성폭력이 문제화되면서 성폭력 범주는 확장되었다.

성폭력을 문제화한 10년 간의 역사는 여성 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성폭력 개념구성의 확장-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불식하는 여러 작업과 함께 '대여성 폭력범죄'라는 인식의 공유의 역사이며 성폭력문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초를 잡아놓았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 제정/개정의 결과가 보호법익이 모호한 반쪽자리 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성폭력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게 한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법 등의 법 등이 성희롱 등을 구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법개정 운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론 법개정도 필요하고 새로운 법제정(스토킹법)도 필요하지만 필자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 성폭력을 이야기하는가이다. 성폭력을 끝내려는 운동의 방향성이 관건이다. 성폭력의 문제화가 성폭력을 둘러싸고 관통되어지는 성별권력의 문제를 과연 어느 정도 풀어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성문화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성의 성적 권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현재의 100인위가 공개한, 상사로서의 위계와 친밀감을 이용한 운동권 사회의 가부장성으로 점철된 강#구 성폭력 사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위계는 아니지만 왜곡된 성의식과 친밀감을 빙자 운동권이라는 것을 이용한 이*주 사건 등(데이트 성폭력)의 성별권력의 정치화는 반성폭력 운동의 또 다른 획을 긋는 사건이다. 운동권이라는 진보세력의 자성적 성찰과 함께! 여성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성폭력 추방 운동사를 다시 쓰려면 여성운동은 처음 시작처럼 또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 성폭력 개념이 넓혀진다는 것(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결국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주체가 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제반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